

# 首都圈整備計画法 施行令중 改正令

대통령령 제13,813호

1992. 12. 31.

## ◇개정이유

개발유보권역·자연보전권역 등 수도권내 변두리지역에서의 공장설치 및 택지개발사업 등에 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당해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도권내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부득이하게 시행되는 경우, 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각종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개발유도권역·자연보전권역 및 개발유보권역 지역경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당해 권역에 농산물 가공공장, 축산비료공장 및 축축장의 신·증설을 허용하고, 당해 권역안의 기존공장은 참고 및 사무실을 연면적 500제곱미터이내에서 증설할 수 있도록 함(령 제16조제3항·제17조제2항·제18조제1호 및 별표).

나. 자연보전권역 및 개발유보권역안에서는 교육정책상 필요하여 교육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규모 대학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함(령 제17조의2제4호 및 제18조의2제5호).

다. 개발유보권역에서의 택지조성사업은6만제곱미터까지 허용하던 것을 15만 제곱미터까지 허용하여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함(령 제18조의2제1호).

라. 수도권에서 100만제곱미터이상의 택지조성·공유수면매립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교통시설·용수공급시설·환경오염방지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을 작성하여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령 제20조제2호).

마. 자연보전권역에서 신설·증설이 허용되는 업종에 인쇄회로판 제조업 등 5종의 첨단산업 업종을 추가함(령 별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중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식당·휴게실·목욕실 등 종업원의 기본적인 후생복지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증대를 위한 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사무실 및 창고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중앙행정기관 및 그 제1차소속기관”을 “중앙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제1차 소속기관중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 단위로 설치되는 기관외의 기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제6호·제9항제5호 또는 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나목(6)·제9호나목 또는 제11호나목에 해당하는 시설”로 하고, 동조제3항중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제13항 또는 제14항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가목(1) 내지(3), 동호나목(1) 및 (2), 제13호(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을 제외한다)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하며, 동조제4항중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9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나목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제13조제1항제5호가목중 “또는 보건위생”을

“정보처리(서비스분야에 속하는 것에 한한다) 또는 보건위생”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5호”로 한다.

제16조제3항제1호 본문중 “공장의 증설”을 “공장의 증설과 기존공장으로서 연면적 500 제곱미터이내에서의 창고 및 사무실의 증설”로 한다.

제16조제3항제3호 단서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이 허용되는 업종의 공장”을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된 공장”으로 하여 동호를 동항제5호로 하고, 동항제2호를 동항제4호로 하며, 동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농림수산부장관이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한 도축장(도계장·간이도계장 및 도토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통폐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축용시설(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육지동물고기 가공 및 저장 처리업용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도축용시설의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내에서의 신설·증설
3. 생산자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수축의 분뇨를 주된 원료로 하는 비료공장으로서 공장건축물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내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이라 함은 3만제곱미터이상을 말한다.

제17조제2항제1호나목중 “공장의 증설”을 “공장의 증설과 기존공장으로서 연면적 500 제곱미터이내에서의 창고 및 사무실의 증설”로 하고, 동호나목중 “자연보전권역안에 지역적으로 특화되어 있는 도자기제품을 제조하는 업종의 공장”을 “자연보전권역안에 지역적으로 특화되어있는 도자기제품을 제조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공장건축물의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내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및 동 업종의 기존공장으로서 공장건축물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내에서의 공장의 증설”로 하며, 동호나목중 “콘크리트조립 구조재 및 철강보강 제품제조업 공장”을 “콘크리트조립 구조재 및 기타 토목공사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공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나목 및 바목을 각각 동호나목 및 아목으로 하고, 동호에 나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마. 농림수산부장관이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한 도축장의 통폐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축용 시설로서 도축용 시설의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내에서의 신설·증설
- 바. 생산자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수축의 분뇨를 주된 원료로 하는 비료 공장으로서 공장건축물의 연면적 3천 제곱미터이내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중 “제1호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이 허용되는 업종

의 공장”을 “제1호가목·다목·마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된 공장”으로 하고, “신설·증설되는 공장”을 “신설·증설된 공장”으로 한다.

제17조제3항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동항 제5호 내지 제7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을 위한 시설, 도시계획법에 의한 유원지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위락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 및 운동시설(건축물 및 이에 수반되는 시설에 한한다)등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제17조제2의3호중 “콘크리트조립구조재 및 철강보강제품 제조업공장”을 “콘크리트조립 구조재 및 기타 토목공사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공장”으로 하고,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입학정원이 50인이내인 대학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교육정책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대학의 신설과 동 학교시설의 신축 등의 경우
6. 제17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6만제곱미터이하인 경우

제18조 본문중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 2에 해당하는 업종”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으로 하고, 동조제1호가목 전단중 “공장의 증설”을 “공장의 증설 및 기존공장에서 연면적 500제곱미터내에서의 창고 및 사무실의 증설”로 한다.

제18조제1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동호마목 및 바목으로 하고, 동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호가목 중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제1호가목 내지 라목”으로 한다.

- 다. 농림수산부장관이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한 도축장의 통폐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축용시설로서 도축용시설의 연면적 5천제곱미터내에서의 신설·증설

- 라. 생산자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수축의 분뇨를 주된 원료로 하는 비료 공장으로서 공장건축물의 연면적 3천미터내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제18조의2제1호중 “6만제곱미터이하”를 “15만제곱미터이하”로 하고, 동조제5호를 동조제7호로 하며, 동조제4호를 동조제5호로 하되, 동호(중건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호 및 제 6호를 각각 다음과

(별표)

자연보전권역등에서 신·증설이 허용되는 업종  
(제16조·제17조 및 제18조 관련)

개발유도권역·개발유보권역에서 신설·증설이 허용되는 업종	자연보전권역에서 신설·증설이 허용되는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곡물도정업</li> <li>· 곡물제분업</li> <li>· 곡물조리식품 제조업</li> <li>· 빵 제조업</li> <li>· 떡 제조업</li> <li>· 얼음 제조업</li> <li>·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li> <li>· 탁주 및 약주 제조업</li> <li>· 일반 제재업</li> <li>· 기타 건축용 목제품 제조업</li> <li>·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li> <li>· 노트·앨범 및 유사제품 제조업</li> <li>· 종이라벨 제조업</li> <li>· 벽돌 및 유사제품 제조업</li> <li>· 기와 및 관련제품 제조업</li> <li>·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li> <li>· 레미콘 제조업</li> <li>· 콘크리트 타일·기와·벽돌 및 블록 제조업</li> <li>· 성형가공석재 및 석제품 제조업</li> <li>· 착색가공석재 생산업</li> <li>· 왕겨탄 제조업</li> <li>· 과일 및 채소절임식품 제조업</li> <li>· 천연조미제품 제조업(농민·생산자 단체의사업에 한함)</li> <li>· 장류 제조업(농민·생산자단체의 사업에 한함)</li> <li>· 식물성유지 제조업(농민·생산자단체의 사업에 한함)</li> <li>· 수축의 분뇨를 주된 원료로 하는 비료 제조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곡물도정업</li> <li>· 곡물제분업</li> <li>· 곡물조리식품 제조업</li> <li>· 빵 제조업</li> <li>· 떡 제조업</li> <li>· 얼음 제조업</li> <li>·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li> <li>· 탁주 및 약주제조업</li> <li>· 일반 제재업</li> <li>· 기타 건축용 목제품 제조업</li> <li>·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li> <li>· 노트·앨범 및 유사제품 제조업</li> <li>· 종이라벨 제조업</li> <li>· 벽돌 및 유사제품 제조업</li> <li>· 기와 및 관련제품 제조업</li> <li>·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li> <li>· 레미콘 제조업</li> <li>· 콘크리트 타일·기와·벽돌 및 블록 제조업</li> <li>· 성형가공석재 및 석제품 제조업</li> <li>· 착색가공석재 생산업</li> <li>· 왕겨탄 제조업</li> <li>· 과일 및 채소절임식품 제조업</li> <li>· 천연조미제품 제조업(농민·생산자 단체의사업에 한함)</li> <li>· 장류 제조업(농민·생산자단체의 사업에 한함)</li> <li>· 수축의 분뇨를 주된 원료로 하는 비료 제조업</li> <li>· 컴퓨터 제조업</li> <li>· 컴퓨터 기억장치 제조업</li> <li>· 컴퓨터 입출력장치 제조업</li> <li>·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컴퓨터 및 그 주변 기기의 제조업</li> <li>·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음향기기 제조업</li> <li>· 유선통신장치 제조업</li> <li>· 무선통신·방송 및 응용장치 제조업</li> <li>·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li> <li>· 방사선장치 및 전기진단·요법기기 제조업</li> <li>·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제조업</li> <li>· 전자 집적회로제조업</li> <li>· 축전기 제조업</li> <li>· 전자저항기 제조업</li> <li>· 전자 변성기 제조업</li> </ul>

개발유도권역·개발유보권역에서 신설·증설이 허용되는 업종	자연보전권역에서 신설·증설이 허용되는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섬유 및 광학요소 제조업(촬영기 및 영상기용 대물렌즈 제조업을 포함함)</li> <li>· 복사기 제조업</li> <li>· 전자기측정·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li> <li>· 기체 및 액체용 적산계기 제조업</li> <li>· 자동조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li> <li>· 산업처리자동측정 및 제어장비 제조업</li> <li>· 인쇄회로판 제조업</li> <li>·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전자관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li> <li>· 배전반 및 자동제어반제조업</li> <li>· 기기용 전기회로 개폐·보호 및 접속장치 제조업</li> <li>· 조명장치 제조업</li> </ul>

같이 신설한다.

- 4.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국가기관 청사의 신축 등의 경우
- 5.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입학정원이 50인 이내의 대학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교육정책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대학의 신설과 동학교시설의 신축 등의 경우

6. 제17조의2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8조의4중“당해 연도”를 “전년도”로 한다.

제20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동조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사업면적이 100만제곱미터이상인 택지 조성·공유수면매립 등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교통시설·용수공급시설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제31조제1항중“관계기관의 공무원 또는 수도권정비계획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로 부터”를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부터”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권정비계획에 관하여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를 지정하여 그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